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738
----------	------

제 안 년 월 일 : 2021년 09월 07일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이종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84번)과 정진술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68번) 이상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2021년 9월 7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년 5월 18일)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명기하고자 함.
- 그 밖에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명확한 의미전달이 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3. 대안의 주요내용

- 체육시설, 일반이용자, 공중보건 위기상황 등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제1호의2, 안 제2조 제14호·제15호 신설)
-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 방역, 예방조치 마련시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특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제2항 신설)
-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조례」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로 통합됨에 따라 체육인 인권과 관련된 사항을 체육진흥협의회가 수행토록 규정된 바, 이를 인권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 제14조(설치)제2항제2호의2를 삭제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신설)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의2,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4.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내고 이를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사람을 말한다.

15. “공중보건 위기상황”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대유행(대유행이 현저히 우려되는 감염병의 발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으로 국민의 생명·신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수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관내 체육시설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를」에 따른 방역 및 예방 조치를 하는 경우에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이 원활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재정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의2를 삭제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 략)</p> <p>1. (생 략)</p> <p><u>&lt;신 설&gt;</u></p> <p>2. ~ 13. (생 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u>1의2.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u></p> <p>2. ~ 13. (현행과 같음)</p> <p><u>14.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내고 이를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사람을 말한다.</u></p> <p><u>15. “공중보건 위기상황”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대유행(대유행이 현저히 우려되는 감염병의 발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으로 국민의 생명·신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수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u></p>
<p>제4조(책무)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u></p>	<p>제4조(책무) ① <u>서울특별시장(이하</u></p>

장"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재정 지원) ①·② (생략)

<신 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 및 예방 조치를 하는 경우에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이 원활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 등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의2를 삭제한다.